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2
------	------

제출일자 : 2025. 1. 2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입법예고(2024. 12. 27 ~ 2025. 1. 1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3) 비용추계서: 별도첨부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의 근로문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근무형태에 맞추어 지원금액을 다양화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규직 정의 정비(안 제2조제5호)
- 나. 주민고용보조금 지원금액의 다양화를 위해 “월50만원”을 “월50만원 이내”로 변경(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 나. 예산조치: 구비편성
- 다. 기 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업에게”를 “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을 “보장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업에게”를 “기업에”로, “월50만원”을 “월50만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주민고용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금천구 주민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u>기업에게</u>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u>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u>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제7조(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u>기업에게</u>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u>월50만원</u> 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조례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용 필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입	주민고용보조금 재정지원	120,000	142,800	142,800	142,800	142,800	691,200
	소계(a)	120,000	142,800	142,800	142,800	142,800	691,200
세출							
	소계(b)						
□ 총 비용(a-b)		120,000	142,800	142,800	142,800	142,800	691,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체재원	120,000	142,800	142,800	142,800	142,800	691,200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20,000	142,800	142,800	142,800	142,800	691,200

5. 작성자 :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팀 이주연(2627-201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재정지원금 : 연 142,800천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40명
 - 1인당 최대 228만원 (월 38만원*6개월), 10명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1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20., 2023.12.29.>

1. “금천구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3.12.29.>
3. “중소기업”이란 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주민고용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금천구 주민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적으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 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은 금천구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고용안정화를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고용보조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금천구 주민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5조(대상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2023.12.29.>

1. 입사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주민등록상 나이가 1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
4. 입사기업에 이전 근무경력이 있지 아니한 사람
5. 입사기업의 대표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원대상 업체)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구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3.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으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체 또는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과건업체가 아닌 기업

제7조(지원범위 등)

- ①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과 별도로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위하여 직업훈련 안내, 구직자 알선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 ① 고용보조금의 신청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해야 한다.
- ②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 ①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제출 날짜가 빠른 순으로 기업을 선정하되, 선정 기업의 제한이 필요하거나 다수기업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3.12.29.>
 1.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
 2. 금천구 취업박람회 참가한 경력이 있는 기업
 3.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
-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 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환수한다.<개정 2023.12.29.>
 1.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퇴직시키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허위에 의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기존의 근무 직원을 재 채용하여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환수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전액환수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1년간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29.>

관계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